

영주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7
----------	-----

제출연월일 : 2004.

제출자 : 영주시장

1. 제안이유

- 장기적으로 현재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직영급식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단계적인 무상급식의 실시로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하며
- 친환경 및 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도록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시민 식생활 개선을 도모하고
- 학교급식의 관리를 지방자치 단체 차원에서 체계화 하여 빈발하는 식중독 사고의 원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 전문가와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하고
- 학교 급식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계층 및 소득의 차별 없이 균형잡힌 식사를 함으로써 건전한 식습관 형성은 물론 우리의 전통 음식문화를 계승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의 생산·유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 등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자치단체의 의무(제4조) 완전무상급식이 이루어 질 때까지 학교급식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매년 지원하도록 함.
- 지원대상(제5조) 학교 급식 지원대상은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 중 영주시 관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로 함
- 지원방법(제6조) 학교 급식에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제8조) 시장은 학교급식 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 지원대상자의 의무(제9조)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수·축산물 식재료 구입에 사용해야 한다.

3. 자치법규안 : 영주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붙임1)

4. 참고사항

1) 영주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붙임2)

(영주시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본부안)

2)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제정시 참고자료(붙임3)

(국무조정실 표준조례안)

3) 영주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검토의견(붙임4)

4)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과정(붙임5)

5) 학교급식조례 관련법령(붙임6)

6)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입법예고결과보고(붙임7)

7) 영주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의견(별책)

(붙임1)

영주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을 통해 학생들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영주시 지역에 대한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을 통하여 시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초·중·고등학교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안전하고 균형 잡힌 영양공급과 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과 건강관리능력의 배양
2. 우수 농·수·축산물의 생산, 배분, 소비 및 전통 식생활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3.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를 통하여 성장과 교육의 균등 기회보장
4. 적영급식확대 및 위생관리 강화
5. 완전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정책수립과 예산의 확보를 통한 학부모 부담의 최소화
6. 학교급식을 통한 건전한 공동체 및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

제3조(정의) ①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의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② "우수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된 전통가공식품의 식재료로서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 인증된 친환경농산물과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 농산물 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축산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과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한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적용 축산물,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을 말한다.

③ "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를 말한다.

④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2

제4조(자치단체의 의무) ① 시장은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해 3년 단위의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학교장에게 지원한다.

② 시장은 완전무상급식이 이루어 질 때 까지 학교급식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매년 지원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① 지원대상은 학교급식법 제2조에 명시된 영주시 관내의 초·중·고등학교로서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에 급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한다.

② 직영급식을 하는 자와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지원 대상자에게 급식재료 구입비를 우선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급식시설과 설비의 보완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 농·수·축산물의 수급에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② 시장은 학교급식을 위하여 우수 농·수·축산물을 직접 공급 할 수 있다. 또한 우수 농·수·축산물이 학교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는 영주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②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하되, 위원은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자로 구성한다. 단, 민간위원의 수가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

1. 영주시 부시장 및 관련 국장,과장 각 1인
 2. 영주시의회 의원 또는 의회에서 추천한 자 1인
 3. 영주시 교육청의 관련 과장 또는 교육청에서 추천한 자 1인
 4. 영주시 지역 학교급식 영양사회에서 추천한 자 1인
 5.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
 6. 교사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
 7. 농·수·축산단체에서 추천한 자 각1인
 8. 영주시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추천한자 2인
-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 간사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수·축산물 식재료 구입에 사용해야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시장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시장과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필요시 지원대상의 학교에 급식 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으로 성실히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9조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에 사용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교부받아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사용 중에 관리 잘못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학교장을 소속된 상급기관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관련기관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등의 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영주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영주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을 통해 학생들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영주시 지역에 대한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을 통하여 시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주시장·초·중·고등학교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① 학생의 안전하고 균형 잡힌 영양공급과 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과 건강관리능력의 배양
- ② 우수 농·수·축산물의 생산, 배분, 소비 및 전통 식생활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 ③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를 통하여 성장과 교육의 균등 기회보장
- ④ 적정급식 확대 및 위생관리 강화
- ⑤ 완전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정책수립과 예산의 확보를 통한 학부모 부담의 최소화
- ⑥ 학교급식을 통한 건전한 공동체 및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

제3조(정의)

- ①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의 실현을 위해 학교 급식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 ② '우수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전통가공식품의 식재료로서 친환경농업 육성법에 의해 인증된

친환경농산물과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축산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과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한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적용 축산물,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품 및 일정등급이상의 표준규격품을 말한다.

③ '지원대상자' 라 함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를 말한다.

④ '식재료' 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4조(자치단체의 의무)

① 영주시장은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해 3년 단위의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학교장에게 지원한다.

② 영주시장은 완전무상급식이 이루어 질 때 까지 학교급식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매년 지원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① 지원대상은 학교급식법 제2조에 명시된 영주시 관내의 초·중·고등 학교로서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고자 회망하는 학교에 급식 재료 구입비를 지원한다.

② 직영급식을 하는 자와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급식재료 구입비를 우선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급식시설과 설비의 보완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 영주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 농·수·축산물의 수급에 중차 대한 문제가 발생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② 영주시장은 학교급식을 위하여 우수 농·수·축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우수 농·수·축산물이 학교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영주시장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는 영주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②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영주시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영주시장은 제7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하되, 위원은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영주시장이 위촉한자로 구성한다.

단 민간위원의 수가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

1. 영주시 부시장 및 관련 국장,과장 각 1인
2. 영주시의회 의원 또는 의회에서 추천한 자 1인
3. 영주시 교육청의 관련 과장 또는 교육청에서 추천한 자 1인
4. 영주시 지역 학교급식 영양사회에서 추천한 자 1인
5.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
6. 교사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
7. 농·수·축산단체에서 추천한 자 각1인
8. 영주시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추천한자 2인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 간사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수·축산물 식재료 구입에 사용해야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영주시장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 ① 영주시장과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필요시 지원대상의 학교에 급식 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영주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9조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에 사용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③ 영주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교부받아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사용 중에 관리 잘못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학교장을 소속된 상급기관에 정계를 요구하거나, 관련기관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동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불임3)

00시(군·구)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표준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우수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축산물을 구입 및 우수 농·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군·구에 소재하며,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5조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시·군·구교육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군·구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군·구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00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1. 시·군·구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및 관련 실국장
 2. 시·군·구 교육청 관련국장
 3. 시·군·구 의회의원
 4. 학부모 단체
 5. 교원 단체
 6. 영양사 단체
 7. 농민단체
 8. 시민단체
 9.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③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학교의 장은 식품비 사용내역을 시·군·구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학교급식조례 마련시 반영시켜야 할 사항

* 2004.7.22. 행정자치부에서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검토사항입니다.

① 우리 농수축산물 사용의무 규정의 WTO규정 위배여부

⇒ WTO 규정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지원 가능

* WTO 일반원칙 : 국내산과 외국상품을 차별하지 않아야 함

1. WTO 조달협정과 WTO 농업협정의 비교

구분	WTO 조달협정 (구매)	WTO 농업협정 (보조)
내용	• 정부 구매계약에서 외국산 차별금지	• 정부의 농업생산자에 대한 국내보조에 대해 • 허용보조의 경우 그 유형 • 강제대상 보조의 경우 금액한도 규정
적용 범위	• 시장개방 약속하지 않은 분야 미적용 • 일정금액 이상의 중앙정부(214백만원)와 광역단체(329백만원)의 조달행위에 대해서 만 개방, 기초단체의 조달행위는 미개방	• 강제대상 보조의 경우, 농산물 생산액 의 10%(약 33천억원) 범위 내에서 허용

2. 우리 농축산물 구입시 지원관련 규정의 가능 표현

〈시·도 조례〉 : WTO 농업협정에 의거

- “시도지사는 학교급식에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 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수산물 제외
- *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은, 연간 329백만원 한도 내에서 국내 농산물을 우선 구매시 WTO 조달협정에 할치되나, 그 이상의 경우 동표현은 WTO 조달협정에 위배

〈시·군·구 조례〉 : WTO 조달협정 및 WTO 농업협정에 의거

- “시장·군수·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WTO 조달협정에 합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수산물 제외 (WTO 농업협정에 합치)

[2] 일반 자치단체장에 대하여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수립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근거 >

-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학교급식법 제6조제1항)
-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영양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 (학교급식법 제7조제2항)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제5항, 2003.12.30신설)

- 현행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거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이원화 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에서는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제112조),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 집행기관으로 “시·도교육감(제20조)”을 두고 “교육비특별회계(제40조)”를 따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학교급식법 제6조제1항에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여 학교급식 업무는 교육감의 고유업무 영역으로 규정되어 있음
 - 학교급식업무 : 학교 안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당해 학교 또는 인접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과 특별시·광역시·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공동급식시설을 설치하여 관할구역의 각급학교 학생에 대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업무 (학교급식법 제2조 1)
- 또한 동법 제7조제2항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급식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급식에 대한 제반관리업무를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음

〈참고〉 판례

① 조례안에 대한 의결취소 (대법원, 92.7.28, 92후31)

의원은 의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의 활동과 아무런 관련 없이 의원 개인의 자격에서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에 간섭할 권한이 없으며, 이러한 권한은 법이 규정하는 의회의 권한 밖의 일로서 집행기관과의 권한한계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②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인사권 개입 (대법원, 92.7.28, 92후31)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거나 등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행사할 수 없고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지방의회의장에게 인사추천권을 부여한 조례는 무효임

⇒ 따라서 학교급식 업무는 교육감의 고유업무 영역으로 일반 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교육감의 전속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임. 다만 일반 자치단체장은 식품비 지원과 이와 관련한 예산의 적정집행여부 확인·감사 등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제5항)

③ 급식지원대상에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근거 >

-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학교급식법 제4조)
 -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 3. 초·중등교육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4.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 무료급식대상을 취학 전 아동들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급식대상을 초·중·고등학생으로 규정한 학교급식법과 유치원을 관할하는 유아교육법을 소관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영유아보육법 소관인 여성부에서 판단할 사항임

- * 대상확대와 관련 문제가 되는 것은 포함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이 아니라 추가 소요재원이 쟁점이 되는 바, 이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 관계법령 소관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학교급식법·유아교육법)와 여성부(영유아보육법)에서 판단할 사항임. 다만 대량 확대에 따른 재원문제는 별도 검토사항임.

④ 광역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근거 >

-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 시·군 및 자치구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및 판례에 의거 학교급식 시설비 지원은 기초 자치단체 사무임

〈판례 : 학교급식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의 결무효확인, 대법원 96추84〉

학교급식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설립·경영·지휘·감독에 관한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의 사무에 해당하나, 학교급식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은 시·군·자치구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군·자치구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

⇒ 법령소관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나, 법규정상 기초 자치단체는 학교급식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고, 광역자치단체는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됨

[5] 학교급식관련비용을 포괄적으로 일반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근거 >

-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요하는 경비와 학교급식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원회 또는 학부모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학교급식법 제8조제1항)
- 제1항에 규정된 경비 이외의 급식에 관한 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
-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학교급식법 제2조4)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제5항, 2003.12.30신설)

- 학교급식관련비용은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함 (학교급식법 제8조)
 - 급식 경비는 식품비, 급식운영비, 급식시설·설비비를 일컫는 것으로 (학교급식 법 제2조4), 일반 자치단체에서는 그 중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제5항)
- ⇒ 따라서 포괄적으로 일반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할 수 없음

(붙임4)

영주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의견

□ 제안 취지

- 영주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2004. 10. 30일 제출한 영주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은 2004. 7. 22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시달된 표준안과 일부 내용을 달리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및 학교급식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된 조항이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시에서는 영주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관계자에게 국무조정실에서 시달받은 표준안 내용과 우리시에서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수차례 요구 협의 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음.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9제1항에 의하여 주민발의의 조례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청구서의 청구내용에 따라 조례안을 작성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안에 그 의견을 덧붙여 지방의회에 부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에 우리시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부의하여 심사한 후 의회에 제출하고자 함.

□ 검토 한 사항

- 제3조(정의)제2항의 「우수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이는 WTO 일반원칙상 국내산과 외국상품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과 수산물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WTO 농업협정에 위반하는 사항임.
- 제4조(자치단체의 의무)의 내용 중 시장은 3년 단위의 종합계획과 시책을 수립도록 한 사항은
 - 학교급식법제6조제1항에 교육감의 고유업무 영역이며,
 - 지방자치단체장이 급식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은 위법 사항임
- 제5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의 제1항 내용 중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에 급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끝부분에 “지원한다”로 규정함은 의무조항으로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제6조(지원방법) 내용 중 제2항에서 시장이 학교급식에 우수농수축산물을 직접 공급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이 학교급식에 사용되도록 지도·감독 하게 한 사항은,

- 학교급식법 제6조제1항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제7조2항에서 교육장은 학교급식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둘 수 있도록 교육장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음으로 시장의 권한을 벗어남.

○ 제8조(학교급식실위위원회 설치) 제2항 내용 중 위원을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자로 규정함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업무 안에서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 위원을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자로 함은 필요에 따라서 설치하는 자문기관의 설치 취지에 어긋나는 사항으로 판단됨.

-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내용 중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시장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토록 한 사항은,
 - 학교급식업무는 교육장의 고유업무이며, 표준조례안에서 도 사용내역을 교육장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제10조(지도·감독)제3항의 “시장이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교부받아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사용 중에 관리 잘못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학교장을 소속된 상급기관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관련기관에 민·형사상 잘못을 물을 수 있다.”는 조항은
 - 학교급식업무는 교육감의 고유업무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장이 학교급식에 대한 제반관리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시장은 지원된 예산의 적정집행여부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 시장은 안전사고 발생시 관련 학교장을 징계요구토록 한 사항은 자치단체장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며,
 - 학교급식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해당학교장 징계에 대하여는 교육부에서 마련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 교육장이 처리할 사안으로 시장이 관여할 사안은 아님.

-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동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 규칙은 자치단체장이 법령과 조례의 범위내에서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규칙을 정하도록 함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료됨.

□ 조문별 검토의견 : 붙임 별책과 같음

□ 종합의견

- 본 급식조례안은 영주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청구자의 청구내용과 같이 조례안을 작성하여야 하나
-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내용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므로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영주시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2004. 11.

영 주 시 장

(불일5)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추진 과정

○ 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 : 2004. 6. 7

- 신청자 대표 : 장신덕(문수면 만방리 1296번지)

○ 대표자 증명서 교부 및 취지공표 : 2004. 6. 16

○ 서명 및 청구인 명부작성 : 2004. 6. 17 ~ 9. 16

- 20세이상 연서 대상주민 : 2,500명 이상

○ 서명 및 청구인 명부 접수 : 2004. 9. 15

○ 학교급식조례제정청구취지공표 : 2004. 9. 15

○ 청구인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2004. 9. 16 ~ 9. 22

○ 영주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04. 10. 6

- 연서주민수 : 4,247명

- 무효서명인수 : 287명

- 유효서명인수 : 3,960명

○ 영주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통보 : 2004. 10. 6

- 영주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청구 수리

○ 영주시학교급식조례안 입법예고 : 2004. 11. 1 ~ 11. 22(21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붙임6)

학교급식조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第13條의3 (條例의 制定 및 改廢 請求) ①地方自治團體의 20歲 이상의 住民 (公職選舉 및 選舉不正防止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選舉權이 없는 者는 제외한다. 이하 이 條 및 第13條의4에서 "20歲 이상의 住民"이라 한다)은 20歲 이상의 住民 總數의 20分의 1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20歲 이상의 住民數 이상의 連署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條例의 制定이나 改廢를 請求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사항은 請求對象에서 제외한다.

1. 地方稅 · 使用料 · 手數料 · 負擔金의 賦課 · 徵收 또는 減免에 관한 사항
2. 行政機構의 設置 · 变경에 관한 사항 또는 公共施設의 設置를 반대하는 사항

②地方自治團體의 20歲 이상의 住民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條例의 制定이나 改廢를 請求하는 때에는 請求人의 代表者를 선정하여 이를 請求人名簿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는 때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즉시 그 내용을 公表하여야 하며, 請求를 접수한 날부터 7日간 請求人名簿 또는 그 築本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請求人名簿의 署名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第3項의 기간 이내에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이 있는 때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3項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日 이내에 이를 審查 · 決定하되, 그 申請이 이유있다고 決定한 때에는 請求人名簿를 수정하고, 이를 異議申請을 한 者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人의 代表者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異議申請이 이유없다고 決定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異議申請을 한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이 없는 경우 또는 同項의 規定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異議申請에 대하여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이 완료된 경우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請求를 受理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請求를 却下하여 이를 請求人の 代表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請求를 受理한 날부터 60日 이내에 條例의 制定 또는 改廢案을 작성하여 地方議會에 附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請求人の 代表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第1項의 規定에 의한 20歲 이상의 住民 總數는 年度別로 산정하되, 住民登錄法의 規定에 의한 住民登錄票에 의하여 조사한 前年度 12月 31日 현재 人口統計에 의한다.

⑨ 條例의 制定 및 改廢 請求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9(조례안의 작성 및 지방의회에의 부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청구서의 청구내용에 따라 조례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안에 그 의견을 덧붙여 지방의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학교급식법

第6條 (學校給食의 運營原則 및 管理基準) ①學校給食은 教育의 一環으로
運營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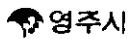
②學校給食의 內容은 學生의 發育과 健康에 諸요한 營養을 充足할 수 있는 食品
으로 構成되어야 하며, 給食管理에 있어서는 衛生과 安全에 徹底를 기하여야
한다.

③學校給食의 營養 및 管理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條 (영양교사 등의 배치)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
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양교사를 둔다. 학교급식공급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한 자격을 가진 학교급식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

②教育監 및 教育長은 學校給食에 관한 業務를 專擔하게 하기 위하여 營養에
관한 專門知識이 있는 職員을 둘 수 있다.

(붙임7)



영 주 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영주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결과 보고

1. 총무과-7649(2004.11.1)호와 관련입니다.
2. 영주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가. 예고기간 : 2004. 11. 1 ~ 11. 22(21일간)
 - 나. 예고방법 : 인터넷홈페이지, 영주시보, 게시판게시
 - 다. 예고결과

구 분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비고
개 인	접수된 의견 없음	
단 체	"	

끝.

★담당자 강병수 교육협력단 김종길 총무과장 전결 11/24
김제건

별지자

시행 총무과-8136 (2004.11.24.) 경수
우 750-701 경상북도 영주시 유흥동 470 / <http://www.yeongju.go.kr/>
전화 (054)639-6087 /전송 634-3127 / kbs3101@yeongju.to / 공개

(별책)

영주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검 토 의 견

678

영 주 시

영주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의견

표준조례(안)	입법예고조례(안)	조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을 통하여 학생들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영주시 지역에 대한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을 통하여 시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을 통하여 학생들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영주시 지역에 대한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을 통하여 시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검토의견</p> <p>문장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함.</p>

표준조례(안)	입 법 예 고 조 례 (안)	조 정 (안)
	<p>제2조(목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u>영주시장</u>(이하 '시장'이라한다)초·중·고등학교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의 안전하고 균형 잡힌 영양공급과 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과 건강관리능력의 배양 2. 우수 농수축산물의 생산, 배분, 소비 및 전통 식생활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3.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를 통하여 성장과 교육의 균등 기회보장 4. 적영급식확대 및 위생관리 강화 5. 완전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정책수립과 예산의 확보를 통한 학부모 부담의 최소화 6. 학교급식을 통한 건전한 공동체 및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 	<p>제2조(목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u>영주교육장</u>(이하 '교육장'이라한다)초·중·고등학교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의 안전하고 균형 잡힌 영양공급과 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과 건강관리능력의 배양 2. 우수 농수축산물의 생산, 배분, 소비 및 전통 식생활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3.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를 통하여 성장과 교육의 균등 기회보장 4. 적영급식확대 및 위생관리 강화 5. 완전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정책수립과 예산의 확보를 통한 학부모 부담의 최소화 6. 학교급식을 통한 건전한 공동체 및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

표준조례(안)	입법예고조례(안)	조정(안)
		<p>* 검토의견</p> <p>· 학교급식법 제7조 2항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제반관리 업무를 시,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와 같이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p> <p>규칙으로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우수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p>제3조(정의) ①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의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p> <p>② “우수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전통가공식품의 식재료로서 친환경농업 육성법에 의해 인증된 친환경농산물과 농산</p>	<p>제3조(정의) ①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의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p> <p>② “우수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p>

표준조례(안)	입법예고조례(안)	조정(안)
<p>3. “식품비” 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축산물을 구입 및 우수 농·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p>	<p><u>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 농산물 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축산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과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HACCP(위해요소 증점관리제도) 적용 축산물,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품 및 일정등급이상의 표준규격품을 말한다.</u></p> <p>③ “지원대상자” 라 함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를 말한다.</p> <p>④ “식재료” 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p>	<p>③ “지원대상자” 라 함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를 말한다.</p> <p>④ “식재료” 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p> <p>*검토의견</p> <p>2004. 7. 22 국무조정실에서 시달된 내용에 학교급식조례 마련 시 반영시켜 할 사항으로, WTO 일반원칙은 국내산과 외국상품을 차별하지 않아야 함이 원칙임을 강조하고 있으며,</p>
4. “식재료” 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표준조례(안)	입법예고조례(안)	조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WTO 조달협정 및 WTO 농업협정에 의거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원하는 것은 학교급식식재료 구입시 우리 농수축산물 중 농축산물 구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나 제3조 제2항에서와 같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로 하는 것은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를 위반한 사항임(수산물 제외).
	<p>제4조(자치단체의 의무) ①시장은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해 <u>3년 단위의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학교장에게 지원한다.</u> <u>②시장은 완전무상급식이 이루어 질 때 까지 학교급식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매년 지원한다.</u></p>	<p>제4조(자치단체의 의무) ①삭제 ②삭제</p> <p>*검토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이원화 하고 있으며 학교급식법 제6조 제1항에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

표준조례(안)	입법예고조례(안)	조정(안)
		<p>되어야 한다'고 하여 학교급식업무는 교육감의 고유업무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이 3년 단위의 종합적인 계획 및 사책을 수립한다고 하는 것은 교육감의 고유업무 영역을 침해하는 위법사항으로 제4조(자치단체의 의무)의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함.</p>
<p>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①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시장·군수·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p> <p>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에 소재하며,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으로 한다.</p>	<p>제5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①지원대상은 학교급식법 제2조에 명시된 영주시 관내의 초·중·고등학교로서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에 급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한다.</p> <p>②직영급식을 하는 자와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지원 대상자에게 급식재료 구입비를 우선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급식시설과 설비의 보완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p>	<p>제5조(학교급식식품비 지원) ①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지원대상은 학교급식법 제2조에 명시된 영주시 관내의 초·중·고등학교로서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에 급식재료 구입비를 지원 할 수 있다.</p> <p>③직영급식을 하는 자와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지원 대상자에게 급식재료 구입비를 우선 지원 할 수 있다.</p>

표준조례(안)	입법예고조례(안)	조정(안)
		<p>* 검토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이 학교급식에 우리 농·축산물을 및 우수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수산물을 제외됨. ·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끝 부분에 "지원 한다"로 규정하는 것은 의무조항으로서 "지원 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국무조정실에서 시달린 학교급식조례제정 시 반영시켜야 할 사항에 급식경비는 식품비, 급식운영비, 급식시설·설비비 중 일반자치단체에서는 그 중 식품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제5조2항을 "급식재료 구입비를 우선지원 할 수 있다"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함.
제5조(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①시장·군수·구청장과 시·군·구교육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 농·수·축산물의 수급에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6조(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①시장과 교육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준조례(안)	입법예고조례(안)	조정(안)
<p>②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u>시장은</u> 학교급식을 위하여 우수 농수축산물을 직접 공급 할 수 있다. 또한 우수 농수축산물이 학교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③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u>교육장은</u> 학교급식을 위하여 우수 농수축산물을 직접 공급 할 수 있다. 또한 우수 농수축산물이 학교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③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p> <p>* 검토의견 학교급식법 제6조1항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제7조2항에서 교육장은 학교급식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둘 수 있도록 교육장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6조제2항의 시장이 직접 공급하고 지도·감독하는 것은 교육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음.</p>
<p>제6조(지원신청)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군·구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초·중학교는 영주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조(지원신청)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표준조례(안)	입법예고조례(안)	조정(안)
<p>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p> <p>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p> <p>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p> <p>4.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p> <p>5. 급식시행계획</p> <p>6. 기타 필요한 사항</p> <p>② 시·군·구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p> <p>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p> <p>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p> <p>4.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p> <p>5. 급식시행 계획</p> <p>②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③시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p> <p>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p> <p>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p> <p>4.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p> <p>5. 급식시행 계획</p> <p>②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③시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 검토의견</p> <p>제7조 제1항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의무가 교육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신청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 함.</p>

표준조례(안)	입법예고조례(안)	조정(안)
<p>제7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인 이내로 하되, 위원은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단, 민간위원의 수가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군·구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및 관련 실국장 2. 시·군·구 교육청 관련국장 3. 시·군·구 의회의원 4. 학부모 단체 5. 교원 단체 6. 영양사 단체 7. 농민단체 8. 시민단체 	<p>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하되, 위원은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단, 민간위원의 수가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주시 부시장 및 관련 국장,과장 각 1인 2. 영주시의회 의원 또는 의회에서 추천한 자 1인 3. 영주시 교육청의 관련 과장 또는 교육청에서 추천한 자 1인 4. 영주시 지역 학교급식 영양사회에서 추천한 자 1인 5.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 6. 교사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 7. 농·수·축산단체에서 추천한 자 각1인 8. 영주시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추천한자 2인 	<p>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단, 민간위원의 수가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주시 부시장 및 관련 국장,과장 각 1인 2. 영주시의회 의원 또는 의회에서 추천한 자 1인 3. 영주시 교육청의 관련 과장 또는 교육청에서 추천한 자 1인 4. 영주시 지역 학교급식 영양사회에서 추천한 자 1인 5.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 6. 교사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 7. 농·수·축산단체에서 추천한 자 각1인 8. 영주시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추천한자 2인

표준조례(안)	입 법 예 고 조 례 (안)	조 정 (안)
<p>9.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회 1인과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검토 의견</p> <p>입법예고조례안 제8조제2항의 문안 내용 중 ‘위원은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로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함.</p> <p>·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위원회는 지방자치 단체가 그 소관업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p>

표준조례(안)	입법예고조례(안)	조정(안)
		<p>여기서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선임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설치하는 자문기관의 취지에 어긋나는 사항임으로 위와 같이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p>
<p>제8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p> <p>②급식학교의 장은 식품비 사용내역을 시·군·구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수·축산물 식재료 구입에 사용해야하고, 매년 <u>지원금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시장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수·축산물 식재료 구입에 사용해야하고, 매년 <u>지원금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p>*검토의견</p> <p>급식업무는 교육장의 고유업무 영역으로서 표준조례안 제8조 제2항과 같이 사용내용을 교육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동조례 시행규칙에서 교육장이 정산내용을 시장과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함.</p>

표준조례(안)	입법예고조례(안)	조정(안)
<p>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과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필요시 지원대상의 학교에 급식 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② 시·군·구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9조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에 사용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p>	<p>②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교부받아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사용 중에 관리 잘못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학교장을 소속된 상급기관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관련 기관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 할 수 있다.</p>

* 검토의견

- 학교급식업무는 교육감의 고유업무 영역이므로 학교급식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고, 시장은 지원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지도·감독함이 타당하며.

표준조례(안)	입 법 예 고 조 레 (안)	조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은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사용중에 관리 잘못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학교장을 징계 요구토록 한 사항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이원화한 근본 취지를 위배한다고 생각되며 학교급식 안전사고 발생시 관련 학교장 징계에 대하여는 교육부에서 마련한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교육장이 처리 할 사항으로 자치단체장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생각함.
	<p>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동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u>규칙으로 정한다.</u></p> <p>※ 검토의견</p> <p>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하는 법규이므로 규칙 제정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동의를 거치도록 함은 바람직하지 못함</p>

표준조례(안)	입법예고조례(안)	조정(안)
<p>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